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49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윤재옥・김석기・김기웅

김태호 · 김 건 · 엄태영

정연욱 · 강대식 · 권영진

김상훈 · 임종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나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 모하고 위축된 비아파트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 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 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	등에 대한 감면) ①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	
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	
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	
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	
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5	
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	
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	
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	
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	
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 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 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 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 다]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 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 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 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 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 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 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 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 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

<u>2027년 12월 31일</u>

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